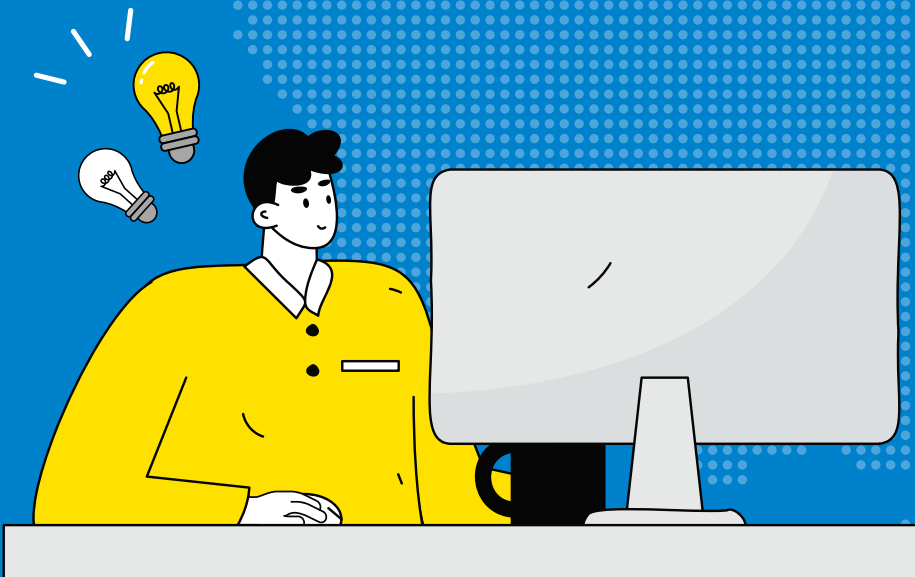


쉽게
이해하는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



Part 01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안내	03
Part 02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 제출 서류	09
Part 03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 FAQ	13
Part 04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세관번호 FAQ	35
Part 05	이중용도 대표 품목 수출허가 신청 FAQ	39
	- 흑연	39
	- 텅스텐·텔루륨	42
	- 희토류	45

KOTRA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제공한 FAQ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해석이나 공식적인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1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안내




01 이종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안내


원문 링크
클릭



설명

이종용도 수출허가 신청은 쉐과정을 '페이퍼리스(Paperless·無紙化)'로 진행함. 수출업체는 중국 수출통제 관련 법률, 법규와 행정규범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상무부의 공식 플랫폼  에서 이종용도 수출허가 신청서 중의 각 항목을 사실대로 입력해야 함. 수출업체는 요구대로 신청자료를 제출하되, 모든 자료의 전자 스캔본, 복사본과 원본은 100% 일치해야 하고,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함

신청서 제출방식 및 제출 페이지 내 표기 필요내용

- 1. 신청자료 제출 방식:** 통상 전자양식으로 제출하나, 특수한 경우 종이문서 제출 가능
- 2. 신청유형:** '최초 신청 및 수령(首次申领)'과 '교체 및 수령(换领)' 중 1개 선택. 허가증 취득 후 허가증 유효기간 내 운송방식, 통관 신고 항구, 상품 가격 등 非핵심요소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교체 및 수령(换领)'을 선택해야 함
- 3. 수출업체:** 상무부의 공식 플랫폼  에서 회원가입 후 관련 정보는 자동 입력됨
- 4. 계약서 번호:**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체결한 무역 계약서 혹은 협의서의 번호를 입력. 계약서 번호가 시스템의 글자수 제한을 초과할 경우, 비교란에 완전하고 정확한 계약서 번호를 표기해야 함
- 5. 수입국/지역:** 대외무역 계약서 중 수입업체의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을 입력
- 6. 최종 목적국/지역:** 최종사용자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을 입력. 즉 화물이 최종적으로 운송되어 사용되는 국가 혹은 지역을 기재 최종목적국/지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실제 화물 운송 노선을 설명하는 보충 자료를 제공해야 함
- 7. 수화인:** 실제 수화인의 외국어 전체 명칭 혹은 중국어 전체 명칭을 입력해야 함
- 8. 최종사용자:** 수출하려는 이종용도 품목 최종사용자의 외국어 전체 명칭 혹은 중국어 전체 명칭을 입력해야 함
- 9. 무역방식:**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
 - 예 일반 무역(一般贸易), 국제 임대(国际租赁), 청부공사(承包工程), 위탁가공(来料加工) 등

10. 결제 방식: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

예 신용장(信用證), 추심(托收), 송금(匯付), 현금 지급(現付), 무료(免費) 등

11. 계약서 체결일: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무역 계약서 혹은 협의서를 체결한 구체적 날짜를 의미.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날짜가 다를 경우 최종 서명일을 입력

12. 운송 방식: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 예컨대 해상 운송, 철도 운송, 도로 운송, 항공 운송, 우편 운송, 해상 운송+육상 운송, 해상 운송+항공 운송 등

13. 통관 신고 항구: 실제 상황에 따라 수출업체가 통관 신고한 항구 명칭을 입력

14. 통화 유형: 계약서 혹은 협의서에 표기한 상품 금액의 통화 유형을 의미

15. 상품 분류: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

예 화물, 기술 혹은 서비스 등

16. 상품 명칭 및 수출통제 코드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된 다섯 자릿수), **상품번호:** 수출업체는 수출 품목의 수출통제 코드와 상품번호에 대해 정확하게 식별하고 시스템의 가이드에 따라 상품 명칭 및 수출통제 코드, 상품번호를 입력해야 함. 상품번호는 세관 번호(HS코드)를 의미하며, 모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상품번호 선택지가 있는 것은 아님. 시스템상 상품번호 선택지가 없으면 수출업체가 사실대로, 자체적으로 입력해야 함

17. 규격, 등급: 수출 품목의 구체적 모델, 규격, 등급 등 파라미터를 입력해야 함. 시스템이 제공한 참고 상품명에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란에 정확한 상품명을 입력해야 함. 수량과 단가는 무역계약서와 일치해야 하며, 통화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면 시스템이 달러값으로 자동 환산됨

18. 운송업체 연락처와 운송 노선 사전 입력 여부: 입력을 권장함 '운송기업 명칭' 란에 운송업체 명칭을, '화물운송 노선' 란에 화물운송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등 정보를 입력

19. 교체 및 수령(換領) 사유: 교체 시 실제 상황에 따라 교체 사유를 사실대로 입력하되, 최초 신청 및 수령(首次申領)의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됨

20. 상품 기술설명: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清單)>, 관련 수출통제 공고 혹은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 입 허가증 관리 목록(目錄)>의 취급 품목에 대한 설명에 따라 수출 예정 품목의 관련 지표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수출 상품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위의 핵심 지표 이외의 품목에 대한 기술정보는 별도의 페이지를 첨부할 수 있음

예 드론 제품의 경우 최장 항속시간, 내풍 능력(km/h), 최대 항속거리, 에어로졸 살포 장치의 용량 등 수치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함

27. 최종사용자 정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 중문 명칭은 표준적인 번역명을 입력 함. 최종사용자의 보충 정보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하되, **최종사용자 소개자료와 일치해야 함.**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상황을 설명한 자료를 첨부할 것

28. 생산업체 관련 정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

29. 수출업체 관련 정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

30. 전자자료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첨부파일을 올릴 것

‘최초 신청 및 수령(首次申請)’ 시 올려야 하는 파일

- 1) ‘신청서’^[법인(직인+간인) 필요]
- 2) 계약서/합의서/기타 증명자료
- 3) 수출 신청 품목의 기술설명서 혹은 검측 보고서
- 4)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등 서약서(承諾書) *수출업체가 확인 후 날인한 중문 번역본 포함
- 5) 최종사용자 상황 설명서 *중문 번역본 포함
- 6) 신청기업의 법인 대표/주요 경영관리자와 취급자의 신분증명서
- 7)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필수사항이 아니며, 신청인은 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출 가능

‘교체 및 수령(換領)’의 경우 올려야 하는 파일

- 1) ‘신청서’^[법인(직인+간인) 필요]
- 2) 증서 교체 필요성 설명
- 3) 폐기 예정인 수출허가증
- 4) 해당 수출허가증 사용을 잠정 중단한 관련 증명자료
- 5) 기타 관련 자료 *필수사항이 아니며, 신청인은 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출 가능

31. 분증(分證): 해당 신청이 승인받은 후 입력한 분증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다수 허가증을 의미함. 분증은 최대 12개로, 분증 상의 수출 물량 합계와 총수출 물량은 일치해야 함. 규격이 서로 다른 여러 개 품목일 경우 분증을 신청할 수 없음

02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 제출 서류



02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신청 시유의 사항, 제출 서류



설명

신청인은 신청 제출 전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의 완전성, 규범성과 일치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해야 함

유의사항 1: 신청 서류의 완전성 및 규범성



참고: '최초 신청 및 수령(首次申請)'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신청서'^[법인(직인+간인) 필요]
- 2) 계약서/합의서/기타 증명자료
- 3) 수출 신청 품목의 기술설명 혹은 검측 보고서
- 4)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중문 번역본 포함
- 5) 수입 업체, 최종 사용자 상황 설명서 *중문 번역본 포함
- 6) 신청기업의 법인 대표/주요 경영관리자와 취급자의 신분증명서
- 7)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신청인은 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출 가능

1. 신청서: 항목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그중, 법정 대표인 서명은 반드시 법정 대표인 혹은 그 위탁인^(위임장 제출 필요)의 자필 서명과 기업 인감이 찍혀야 하며, 신청서 2매 사이에 간인도 필요함

2. 계약서/합의서: 완전한 계약서/합의서 번호, 체결날짜, 상품 명칭과 수출업체, 수입업체 등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 수출업체는 중국 내^(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과 보세구 포함) 기업이어야 하며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 기업 혹은 중국 홍콩/마카오/대만 등 지역의 기업이어야 함 계약서 혹은 합의서는 양측이 서명하거나, 기업 인감(公章)을 찍어야 함. 계약서에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장함

3. **품목 기술설명 혹은 검측 보고서:**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 중국 정부 관련 공고 중의 구체적인 품목 설명을 대조하여 수출 품목의 해당 지표에 대한 실제 상황을 명확히 제공하고, 수출 예정 품목이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일반적으로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최종사용자의 정보와 최종 용도 약속 사항(承諾要點)은 완전해야 함. 영문 원본은 해외 담당자의 서명과 날인 필요함 해외 업체의 기업공인(公章)이 없으면 상황 설명을 첨부해야 함. 중문 번역본은 수출업체 기업공인을 날인하여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함 최종사용자가 중국 홍콩/마카오/대만 기업일 경우 해당 전문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함
5. **수입업체, 최종사용자 소개:** 기업법인, 설립 시간, 경영 범위, 자산규모, 종업원 수, 기업 홈페이지, 주요 제품 등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실제 생산 상황과 제품 사진을 제공하거나 과거 협력 상황 등을 제공할 수 있음
6. **신분증명서:** 수출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언급된 법정대표인, 주요 담당자와 취급인의 신분증명서 자료, 그 사본(선명해야 함)이 포함됨. 관련 자료와 증서는 모두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7. **기타 자료:** 계량 단위의 환산 설명, 과거 수출기록 및 품목의 실제 사용 상황, 수출 물량의 합리성 설명 등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 주관부처로부터 반려된 경우, 시스템의 제시에 따라 수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2: 신청 내용의 일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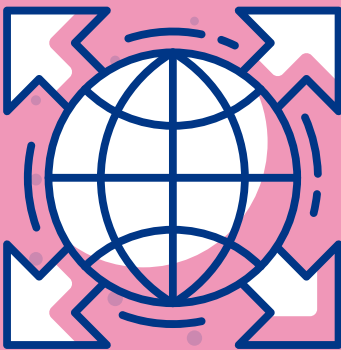
1. 시스템에 올린 자료의 신청서 번호와 시스템상의 신청서 번호는 일치해야 함
2. 신청서 중의 계약서 번호, 계약서 체결일, 수화인, 수입업체, 최종사용자, 상품 규격, 수량, 단위, 가격 등 정보는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일부 항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함
예 계량단위 환산 등
3. 신청서 중의 계약번호, 상품명칭, 수출업체명, 최종사용자 명칭과 주소, 최종용도에 대한 설명 등 정보는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4. 신청서 중의 법정대표인 및 기타 관련 인원의 정보는 제출한 신분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5. 신청 시스템에 입력한 수입업체, 최종사용자 등 정보는 계약서, 수입업체 및 최종사용자 소개,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등 관련 자료와 일치해야 함
6. 신청서 중의 수출 예정 품목은 기술설명을 제출한 품목과 일치해야 함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최초 신청 자체 점검 요점표

서류명	① 필요 항목/내용 확인	② 일치성 점검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입력 설명에 따라 사실대로 입력 - 법정대표인(혹은 수권자) 서명, 기업공인 날인 - 신청서 2매 사이에 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자료의 신청서 번호와 시스템상의 신청서 번호는 일치해야 함
계약서/협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협약서 번호 - 체결날짜 - 상품명칭 및 규격, 모델번호 - 수출업체, 수입업체의 영문과 중문 명칭을 정확하게 입력 - 계약 쌍방 서명 및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중의 내용과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이 일치해야 함(계약서 번호, 체결시간, 상품명칭, 규격·모델번호, 수량, 가격,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
기술설명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용도 수출통제 목록>, 중국 정부 관련 공고와 대조하여 관련 기술지표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의 품목과 기술설명서의 품목명칭, 지표 정보는 일치해야 함
최종사용자·용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에 맞춰 제출 - 약속 사항(承諾要點)의 완전성 보장 - 서명인 성명과 직무가 명확해야 함 - 친필 서명, 기업공인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의 상품명칭, 계약서 번호, 수출업체,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등 정보가 제출한 자료와 일치해야 함
수입업체/ 최종사용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날짜와 사업자 주소 - 경영 범위, 주요 제품 - 자산규모와 종업원 수 - 기업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체, 최종사용자 정보와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 신청서, 계약서 내용은 모두 일치해야 함
신분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주요 담당자 - 취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입력한 인원 정보와 제출한 신분 증명서가 일치해야 함
기타 서류	-	-

03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 FAQ




03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신청 FAQ

1 기본 문의

Q1 ▶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신청 절차는?

- A** ▶ 이중용도 수출허가 신청은全过程 '페이퍼리스(Paperless·無紙化)'로 진행함
- 1) 수출업체는 상무부의 공식 플랫폼  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고, 요구에 따라 성(省)급 상무 주관부처에 관련 신청자료(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함
 - 2) 성급 상무 주관부처는 요구에 부합되는 신청을 상무부에 전달, 보고함
 - 3)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법에 따라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법정 기한 내 심사결과를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체에게 알림
 - 4)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체는 전자승인서(电子批复单)를 근거로, 성급 상무주관 부처의 허가증 시스템에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음

Q2 ▶ 전자인증키*를 발급받으려면? * 로그인 시 사용하는 인증 패스워드 키

- A** ▶ CA 전자인증 서비스업체인 北京国富安电子商务安全认证有限公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자문(상담) 연락처: 86-10-58103599, 홈페이지: <http://www.cacenter.com.cn/> 
전자인증키 신청 후 성급 상무 주관부처에 연락하여 수령할 수 있음

Q3 ▶ 전자인증키가 필요 없는 경우는?

- A** ▶ 수출 예정 품목 자문(품목 식별 상담) 온라인 작성 시 전자인증키가 필요 없음

Q4 ▶ 전자 시스템상 입력/저장/인쇄 등을 할 수 없을 경우는?

- A** ▶ 기술지원은 86-10-67870108에 문의 바람

Q5 수출업체가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A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14조에 근거,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清單)> 내 이중용도 품목 혹은 임시 통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체는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함. 관련 물품, 기술과 서비스가 <수출통제법> 제12조 제3항에 해당할 경우,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군사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름

Q6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A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중용도 수출 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단독 혹은 국가 관련 부처와 함께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수출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근무일 기준 45일 내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함. 자료 반송 혹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한은 상무부가 규정에 부합한 완전한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재집계함

6번에 대한 해석 팁

- **해석:**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는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근무일 기준 4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됨. 다만, 처음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 기간은 보완된 최종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다시 근무일 기준 45일을 새로 계산함**
 - 예 1월 1일 신청 → 반려 없이 접수 완료 → 근무일 기준 45일 이내(약 3월) 허가 여부 통보
 - 1월 1일 신청 → 1월 30일 서류 미비로 반려 → 2월 1일 보완자료 제출 → 2월 1일부터 근무일 기준 45일 내 결과 통보
- **팁:** '근무일'이란 주말과 중국의 공식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평일을 의미함. 또한, 초기 제출 서류가 완전해야 빠른 심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

국가안보와 이익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에 대해 국무원 상무부처는 반드시 국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국무원, 혹은 국무원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함. **국무원 승인 혹은 국무원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은 위 심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음**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는 수출허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법에 따라 전문적 식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수출경영자/최종사용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소요 기한은 수출허가 심사기한으로 집계하지 않음**

Q7 ▶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진도를 조회하는 방법은?

A ▶ 기업은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통제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진도 조회'를 통해 심사 진도를 확인할 수 있음

Q8 ▶ 담당자에게 심사 진도를 유선 문의할 수 있는가?

A ▶ 심사 진도 등은 행정 상대방(신청자)에 한해 공개됨. 전화 문의자는 신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은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진도율을 조회할 것을 권장

Q9 ▶ 시스템 상 진도가 “서명 중(會簽中)”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소요 기간은?

A ▶ '서명 중(會簽中)'이란 각 허가증 발행 기관의 책임자가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함. 기관 1곳의 서명 기간은 통상 10일의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음

Q10 ▶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 신청비용은?

A ▶ 없음(무료)

Q11 ▶ 신청 과정에서 문의가 필요한 경우는?

A ▶ 상무부 안전·통제국(産業安全与進出口管制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통 질문(FAQ)을 확인할 수 있음. 성급 상무 주관부처와 상무부 안전·통제국의 전화번호는 전자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필요 시 품목과 업무 유형에 따라 전화 문의 가능

Q12 ▶ 중국 내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특수감독구역, 보세구역에서 이중용도 품목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이 필요한가?

A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48조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이 중국 경내 및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특수감독구역,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허가증이 필요 없음

Q13 해외로 반출되는 이중용도 품목 샘플 혹은 실험용 샘플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이 필요한가?

A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방법> 제20조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되는 이중용도 품목 샘플 혹은 실험용 샘플도 정상적 수출로 간주하므로, 수출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신청하고 ‘관리방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Q14 이중용도 품목을 수입 후 반출할 경우에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가?

A 반드시 제출해야 함.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 제6조에 “그 어떠한 방식으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허가증 관리 목록’ 내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을 수입, 수출, 경유(過境), 중계운송(轉運), 통운(通運)할 경우, 모두 이중용도 품목 수입/수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함

Q15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급 국유기업의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신청방식은?

A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처에 신청을 제출하고 성급 상무 주관부처는 신청자료를 상무부에 전달함.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심사하고 법정 기한 내 허가 여부를 결정

Q16 모니터링 화학품(监控化学品) 수출입 허가는 상무부에 신청하는가?

A 모니터링 화학품 수출입 허가 심사의 주관부처는 공업정보화부의 国家履行《禁止化学武器公约》工作办公室에서 담당함.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를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配额许可证事务局)에 연락하여 허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Q17 방사성 동위원소(放射性同位素·Radioactive isotope) 수입허가증 신청방법은?

A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출입 허가 심사 주관부처는 생태환경부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를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配额许可证事务局)에 연락하여 허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허가 신청 및 심사

Q18 ▶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시 사전에 경영등록을 진행해야 하는가?

A ▶ 상무부령 2025년 제2호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 수출경영등록은 이미 폐지됨. 즉, 수출경영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Q19 ▶ 이중용도 수출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은?

A ▶ 기업은 상무부 홈페이지-안전-통제국-온라인 업무처리(在线办事), 혹은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 입 통제 응용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 설정근거, 접수조건, 업무절차, 신청자료, 신청과 접수, 진행방식 등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음

Q20 ▶ 하나의 계약서/수출수주로 여러 개의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A ▶ 통상적으로 하나의 계약서/수출수주에 대해 수출허가는 한 개만 신청 가능함. 여러 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여러 번 나눠 신청한 수출물량의 합계는 계약서 상의 총량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수출 허가신청서 하나에 여러 개의 계약번호를 입력할 수 없음

Q21 ▶ 한 개의 수출허가 신청이 여러 회차로 나눠 수출해야 할 경우는?

A ▶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은 '일비일증'(一批一证)을 시행하나, 수출업체가 여러 회차를 나눠 수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한 개로 최대 12개의 허가증(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함.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의 관련 항목에서 선택 가능함

Q22 ▶ 이중용도 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A ▶ 통상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 신청인의 법정대표인/주요 경영관리인 및 취급인의 신분증명서, 계약서/협약서 사본 혹은 기타 증명서류, 수출 예정 품목의 기술 설명 혹은 검측 보고서, 최종사용자 증명서와 최종용도 증명서(중문 번역본 포함), 수입업체/최종사용자 소개(중문 번역본 포함),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

Q23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A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원본, 서명·날인한 '중국인민공화국 민감물품과 기술 수출 허가신청서'를 성급 상무 주관부처에 제출해야 함. 기타 신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이중인증(双认证)이 필요한 수출허가 신청은 성급 상무 주관부처가 전술한 서면 자료들을 상무부에 보고, 제출해야 함

Q24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가?

A 반드시 최종사용자가 서명, 날인한 원본을 제공해야 하며, 수출업체가 번역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하고, 기업 직인을 날인한 중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Q25 수출품목의 최종용도를 어떻게 입력하는가?

A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출 예정 품목의 최종용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신청자료에 최종용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예를 들어, 흑연의 최종용도를 설명하려면 '내화벽돌, 내연제 등 생산에 사용됨' 등 구체적으로 입력 필요

Q26 신청서와 관련 신청자료의 최종용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달라도 괜찮은가?

A 신청서와 관련 신청자료의 최종용도에 대한 중문과 영문 설명은 반드시 100% 일치해야 함

Q27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에 수출 품목의 정확한 세관 번호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A 모든 수출통제 품목이 구체적인 세관 번호를 매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수출 화물의 기술지표가 통제 기준에 도달했으나, 목록에서 구체적 세관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출업체는 자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수출물품의 세관 번호를 입력할 수 있음. 이중용도 기술일 경우 수출업체는 세관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음. 다만, 반드시 품목명과 수출통제 코드를 입력해야 함

Q28 수출허가 신청서 중 계량 단위가 kg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 기타 계량 단위로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표기하면 되는가?

A 수출 계약은 파운드, 편(매), 개 등을 계량 단위로 하는데, 수출허가 신청서에 계량 단위가 kg으로 되어 있을 경우 기업은 kg으로 환산하여 물량을 입력하고 환산 방법을 설명해야 함

Q29 이중용도 품목 통관 신고 시 수출물량은 수출허가증의 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가?

A 통상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방법> 제18조에 따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할 수 있음

예컨대 '일비일증(一批一證)'의 벌크(산적) 이중용도 품목은 초과한 물량이 수출허가증에 적시된 물량의 5% 이내일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함. '비일비일증(非一批一證)'의 벌크(산적) 이중용도 품목은 매 회 수입 시 실제 수입 물량에 따라 공제하되, 마지막 수입 회차의 초과 물량은 허가증에 실제 남아 있는 물량의 5% 이내여야 함



29번에 대한 해석: 일비일증과 비(非)일비일증

- 일비일증(一批一證·1회차 1개 허가증): 허가증 유효기간 내 단 한 번 통관에 사용 가능
- 비일비일증(非一批一證): 유효기간 내 최대 12차례에 걸쳐 통관 가능

Q30 수출허가 신청서 중의 '수화인' 란에 중개업체를 입력해도 되는가?

A 수입업체와 최종사용자 사이 중개업체가 있을 경우, 중개업체가 수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관련 상황을 보충 설명하거나 중개업체와 수입업체/최종사용자 사이 체결한 계약서/협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필요 시 중개업체의 준법 거래 약속 문서를 제공해야 함

Q31 수출허가 신청서 중 법정대표인 서명란에 서명 대신 서명도장을 찍을 수 있는가?

A 수출허가 신청서에는 법정대표인이 직접 친필 사인해야 하며, 서명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음. 타인이 대신 서명할 경우 법정대표인의 위임장(=수권 위탁서)를 제공해야 함

Q32 수출 물량의 합리성에 대한 보충 설명에는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가?

A 수출업체는 과거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출상황, 최종사용자 실제 상황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음. 생산경영 규모/생산능력/다운 스트림 부문 고객 수요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Q33 화물 명칭은 통제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기술지표가 통제 품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중용도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하는가?

A 통제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화물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이 아니므로, 통상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다만, <수출통제법> 제12조에 따라, 수출업체가 수출 예정 물품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송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혹은 테러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거나^① 마땅히 알아야 하거나^② 이를 통보 받았을 시^③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함

Q34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A 개별허가(單項許可)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통상 6개월임. 유효기간이 차년도 3월 31일 후 만기될 경우, 3월 31일 전 해당 지역의 인증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실제 유효기간 내 허가증을 교체 해야 함

Q35 수출허가증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A 운송 방식, 통관 신고지 등이 변경되었거나 시장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상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허가증을 연장하는 등 非핵심요인에 대해 기존 허가증의 유효기간 내 '교체 및 수령'(換領)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은 공식 플랫폼에서 '교체 및 수령'(換領)을 선택한 후 ① 새 신청서, ② 이전 허가증, ③ 이전 허가증 사용을 잠정 중단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변경 사항 및 사유 등을 업로드할 수 있음
통상 허가증 한 개로 단 한 번의 '교체 및 수령'(換領)이 가능함

Q36 통용허가(通用許可)란?

A 통용허가를 취득한 수출업체는 수출허가증이 명시한 범위, 조건과 유효기간 내 단일 혹은 다수의 최종사용자에게 특정 이중용도 품목을 여러 차례 수출할 수 있음. 통용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6번에 대한 해석: 통용허가와 개별허가

- 해석: 중국의 이종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은 개별 수출허가증(매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신청 및 심사) 및 통용 수출허가증(유효기간 내 다수 신청)으로 구분

구분	개별 수출허가증	통용 수출허가증
심사 빈도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신청 및 심사	유효기간 내 다수 신청 및 수령
근거	<이종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	<이종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 통용허가 관리방법>
자격	-	개별건보다 엄격
유효기간	1년	3년

Q37 > 통용허가(通用許可)를 신청하려면?

- A** > <이종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이종용도 수출통제 내부 준법제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종용도 품목 수출기록, 수출경로 및 최종사용자가 상대적으로 고정적일 경우 상무 주관부처에 통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통용허가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상무 주관부처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소통할 것을 권장함

신청시 아래 자료 제출 필요

- (1) 신청인의 법정대표인, 주요 경영관리인 및 취득인의 신분증명서
- (2) 이종용도 품목 수출 관련 계약서/협의서 사본 및 기타 증명자료
- (3) 이종용도 품목 기술설명 혹은 측정 보고서
- (4) 이종용도 품목의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 (5) 이종용도 품목 수출경로 및 최종사용자 소개
- (6) 이종용도 품목 수출통제 내부 준법제도 운영상황 설명
- (7) 이종용도 품목 수출허가증 신청/수령 및 사용상황 설명
- (8)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Q38 > 통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 A** > 수출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 (1) 이종용도 품목 수출통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이종용도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수출통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2) 5년 이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3)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제28조에 규정된 통제 명단에 포함된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독자기업, 대표기관, 지점일 경우
- (4)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가 규정한 기타 상황: 이미 통용허가를 취득한 수출업체가 전술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이미 취득한 통용 허가 증서를 폐지해야 함

Q39 통용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A 통용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출업체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개별허가를 신청해야 함

Q40 수출허가증 신청 시 흔한 오류는?

A 통상 아래 같은 경우 발생


- (1) 신청자료 누락: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충자료를 첨부하지 않음. 신청서에 수출업체 직인, 간인/계인을 찍지 않았거나 법정 대표인 서명 혹은 서명날짜 누락 등
- (2) 서류 날인 문제 및 표기내용 불일치
 -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에 담당자 친필 서명 누락 혹은 서명도장으로 직접 서명을 대체하는 등
 - 최종용도 약속사항(承諾要點)이 불일치하거나 상품 명칭이 불일치, 최종용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는 등
 - 중문 번역 오류, 요구에 따라 최종사용자의 기업명, 주소 등을 번역하지 않았거나 번역본에 수출업체 날인이 없는 경우, 중문과 영문의 표현이 불일치 등
 - 중국 홍콩/마카오/대만의 수입업체가 해당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
- (3) 신청서와 계약서 중의 계약번호, 계약날짜 불일치
- (4) 신청한 수출물량 및 금액과 계약서에 적시한 물량 및 금액이 다를 경우
- (5) 신청서 중의 최종용도,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중의 중문, 영문 설명이 불일치, 최종용도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나 문법 오류 등이 존재할 경우
- (6) 신청서 중의 수출업체, 수입업체, 최종사용자 관련 정보 누락, 혹은 제출한 첨부파일 중의 사용자 소개와 불일치, 수입업체/최종사용자에 대한 설명 누락, 혹은 소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수출물량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7) 신청인 신분증명서 누락, 완전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만료, 혹은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없는 경우


- (8) 제품 기술 설명이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에서 명시한 지표·파라미터를 참조하여 작성되지 않은 경우
- (9) 수입국과 증개업체 국적이 일치하지 않거나 최종사용자 주소, 최종사용자 소재국이 계약서 중의 목적항과 불일치 등

3 품목 판단을 위한 업무 자문(상담) 및 이중용도 품목 포함 여부

Q41 ▶ 수출 예정 품목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대상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A ▶ 수출업체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清單)>에 근거해 수출 예정 품목이 통제 대상인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중국수출통제정보망(中国出口管制信息网)에서 공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DB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음


* 조회 경로: <http://exportcontrol.mofcom.gov.cn/>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출 예정 물품, 기술과 서비스의 성능지표, 주요 용도 등을 잘 파악하여 이중용도 품목 여부를 판단해야 함. 수출업체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상무부의 공식 플랫폼  을 통해 “수출 업무 자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상담 시 수출업체는 수출 예정 품목의 성능지표, 주요 용도 및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유 등을 제공해야 함

사례: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판단 기준과 HS 코드

- **해석:** 중국은 품목의 성능지표, 주요 용도 등에 근거해, 품목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清單)>에 올리는 방식으로 통제품목을 관리함. 해당 연도의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목록(目錄)>은 통관 관리를 위해 수출통제 리스트에 근거해 작성한 것으로, 목록 중의 세관 번호는 해당 품목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 예 ▶ 폴리아미드 복합소재(HS 3926.90.90.10, 수출통제 코드 9C110.a), 폴리아미드계 복합소재(HS 3926.90.90.10, 수출통제 코드 9C110.b), 폴리카보네이트 복합소재(HS 3926.90.90.10, 수출통제 코드 9C110.c) 등 구조복합재료는 이중용도 통제품목임
- 이들 품목은 일반 관리 품목인 기타 플라스틱 제품(HS 3926.90.90.90)과 HS코드 앞 8자리가 동일함. HS 8단위 기준으로 판단 시 이중용도 품목을 일반 품목으로 착각할 수 있음

Q42 업무 자문(상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A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출 예정 물품, 기술과 서비스의 성능지표, 주요 용도 등을 잘 파악하여 이중용도 품목 여부를 판단해야 함. 수출업체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상무부의 공식 플랫폼  을 통해 “수출 업무 자문”을 신청할 수 있음. 수출업체는 상담 신청시 반드시 신청서, 수출 예정 품목 명칭, 수출 예정 물품, 기술과 서비스의 성능지표, 주요 용도 및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유 등을 제공해야 함.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의 상무 주관부처에 문의

Q43 수출업체는 자문서(咨詢函)에 품목의 기술지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A 수출업체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清單)>중 관련 기술설명에 근거해 수출 예정 품목의 관련 기술지표를 설명해야 함

Q44 독성물질 제조가 쉬운 화학품(易制毒化学品)과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가?

A 독성물질 제조가 쉬운 화학품 관련 법규는 해당 품목의 분류, 목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음

Q45 톨루엔을 함유한 접착제 수출 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가?

A 톨루엔 비율을 우선 확인해야 함. 중국 상무부 공고 2007년 제23호에 따르면 톨루엔·아세톤·부탄온·황산 등 4종 독성물질 제조가 쉬운 화학품(易制毒化学品) 중 하나를 함유하고 비율이 40% 이상인 화물, 혹은 염산 비율이 10% 이상인 물품은 독성물질 제조가 쉬운 화학품(易制毒化学品) 관련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Q46 업무자문답변서(業務咨詢答复函)의 유효기간은?

A 답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효함

Q47 기업의 업무자문답변서(业务咨询答复函) 취득 방식은?

A 심사 통과 후 기업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

Q48 규격이 다른 제품도 합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가?

A 규격이 다르지만, 핵심 기술지표가 같을 경우 합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Q49 갈륨 화합물을 포함한 장치 혹은 소재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에 의거한 갈륨 관련 수출통제 대상은 아래와 같음

- a. 금속갈륨 (단질)
- b. 질화갈륨 (웨이퍼, 분말, 스크랩 등의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c. 산화갈륨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필름, 분말, 파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d. 인화갈륨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필름 등의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e. 갈륨비소(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필름, 분말, 파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f. 인듐 갈륨비소
- g. 셀렌화갈륨(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필름, 분말, 파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h. 안티몬화갈륨(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필름, 분말, 파편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질화갈륨 충전기, 인듐 주석 산화물 타겟(ITO), 산화인듐 갈륨 아연 타겟재(IGZO), 광섬유, 유기 게르마늄, 게르마늄 알케인, 염화갈륨, 석류석 결정 및 열전도 페이스트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이 아님.

<수출통제법> 제12조 제3항의 상황은 해당하지 않음

Q50 인조흑연 분말도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인조흑연 분말은 ①고순도(순도>99.9%), ②고강도(항굴절(抗折)강도>30Mpa), ③고밀도(밀도>1.73g/cm³) 등 3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이 아님

Q51 인조흑연 품목에 대한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3종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A ①고순도(순도>99.9%), ②고강도(항굴절(抗折)강도>30Mpa), ③고밀도(밀도>1.73g/cm³) 등 3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인조흑연 및 그 제품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임. 수출업체는 수출허가 신청시 인조흑연 및 그 제품의 기술설명 혹은 검측보고서에 제품의 순도, 항굴절 강도, 밀도 수치를 명시해야 함

Q52 금속 혹은 섬유 등 소재를 사용하여 보강한 흑연제품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금속 또는 섬유 등의 재료(예 면섬유, 유리섬유, 석면, 사불화아라미드, 테트라클로로에틸렌)로 보강된 흑연 디스크, 흑연 스페이서, 흑연 복합판, 흑연선, 흑연 링은 현재 이중용도 품목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수출통제법> 제12조 제3항의 상황은 해당하지 않음

Q53 안티몬은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2025년)'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출허가증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는가?


A 수출 예정 품목이 해당 연도의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따라서 '수출허가증' 신청 및 제출은 불필요 함

53번에 대한 해석 팁


- 해석: 中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2025년)' 관련 공고에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 <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 <500μm), 안티몬, 지르코늄, 베릴륨, 게르마늄, 갈륨 등 품목 수출시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을 취득한 자는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
- 팁: 수출 예정 품목의 허가증 유형은 ①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清單)', ② 해당 연도의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③ 해당 연도의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순서로 확인

Q54 이중용도 수출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상업용 암호는?

A 중국 상무부·국가안호관리국·해관총서가 공동 발표한 2020년 제63호 공고 <상업용 암호 수입 허가 리스트(清單)>, 상무부·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암호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제51호 공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清單)>에 열거한 품목은 모두 이중용도 수출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상업용 암호임. 전술한 목록의 기준에 따라 기업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중용도 수출입 업무 상담 신청이 가능함

Q55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10호 공고인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데 관한 결정”(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5年第10号 公布对钨、碲、铋、钼、铟相关物项 实施出口管制的决定)  중 1C117.d 텅스텐 관련 품목에는 간단한 혼합물도 포함하는가?

A 파라텅스텐산 암모늄(Ammonium paratungstate), 산화텅스텐, 탄화텅스텐과 기타 항목의 간단한 혼합물, 미소결 금속 탄화텅스텐은 현재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됨

Q56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10호 공고인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데 관한 결정”(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5年第10号 公布对钨、碲、铋、钼、铟相关物项 实施出口管制的决定)  중 1C117.c.2 “기계 가공”이란?

A 이번에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고체 텅스텐(1C117.c)은 재료 성분 조건(1C117.c.1)과 관련 수치, 형상 요구(1C117.c.2)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고체 텅스텐 특성상 “기계가공”은 선반, 프레이즈, 평삭, 연삭 등 절삭 가공(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압출, 인장, 확산과 같은(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것은 포함하지 않음

Q57 암모늄(메타)텅스텐 수화물(偏钨酸铵)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암모늄(메타)텅스텐 수화물은 텅스텐의 산성 화합물로,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 아님. 단, <수출통제법> 제12조 제3항의 상황은 예외로 함



<수출통제법> 제12조 발취

국가는 통제 대상 품목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수출 관리·통제 목록에 포함되는 통제 대상 품목 또는 임시 관리·통제 조치 대상인 물품 및 항목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국가 수출 통제 관리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 관리·통제 목록에 포함되는 통제 대상 품목 또는 임시 관리·통제 조치 대상인 물품 및 항목 이외의 화물·기술·서비스 수출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수출업자가 알고 있었거나, 의무적으로 알아야 하거나, 국가 수출 통제 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수출업자는 국가 수출 통제 관리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 (2) 대량파괴 무기 또는 이를 탑재하는 운반 수단의 설계·개발·생산·사용에 쓰이는 경우
- (3) 테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Q58 소결된 금속 텅스텐 탄화물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소결된 금속 탄화텅스텐, 탄화텅스텐 플레이트(블록, 로드, 볼), 탄화텅스텐 금속 세라믹, 탄화텅스텐 합금 분말, 탄화텅스텐 폐기물 스크랩, 탄화텅스텐으로 만든 초경합금 드릴, 블레이드 등, 다이아몬드 복합 시트, 텅스텐 후크(텅스텐강 포함), 스탬핑 몰드(텅스텐강 포함), 밀링 커터(텅스텐강 포함), 텅스텐 와이어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 아님. 단, <수출통제법> 제12조 제3항의 상황은 예외로 함

Q59 텔루륨-아연-카드뮴 타겟재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텔루륨-아연-카드뮴 타겟재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임

Q60 텔루륨화 카드뮴, 텔루륨화 아연으로 제조한 태양광 모듈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텔루륨화 카드뮴, 텔루륨화 아연으로 제조한 태양광 모듈, 텔루륨화 카드뮴 박막 태양광 모듈, 텔루륨화 카드뮴 발전 유리, 텔루륨화 아연 카드뮴 고해상도 프로브 등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 아님. 단, <수출통제법> 제12조 제3항의 상황은 예외로 함

Q61 수출통제 내부 준법제도 구축 방식은?

- A** 상무부 공고 2021년 제10호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체의 수출통제 내부 관리 매커니즘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 및 <이중용도 수출통제 내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출업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내부준법 제도를 구축해야 함. 필요 시 해당 지역의 성급 상무 주관부처 혹은 상무부 안전·통제국에 문의 가능

Q62 어떤 수출업체들이 내부 준법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는지?

- A**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체 외에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 관련 대행, 화물운송, 우편배달, 통관신고,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상업용 압호 수입업체, 독성물질 제조가 쉬운 화학품 수출입 업체, 이중용도 품목 연구개발, 생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연구기관 등

Q63 수출업체가 수출통제 내부 준법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

- A**
- (1) 사전 예방: 교역 전 심사를 통해 위법 리스크 예방할 수 있음
 - (2) 사안 중 보완: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체 점검 및 시정, 자발적 보고, 신속한 보완 등 조치를 통해 부정적인 결과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음
 - (3) 사후 손실 감소: 규정 위반 시 조사에 협조하여 신중하게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수출업체가 수출통제 내부 준법제도를 수립하여 원활하게 운영한 경우,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처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해 통용허가를 발급하는 등 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Q64 수출업체가 내부준법 제도를 구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 A** 상무부 공고 2021년 제10호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체의 수출통제 내부 준법 매커니즘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기업은 수출통제 내부 준법제도를 구축할 때 아래 3개 원칙을 지켜야 함
- (1) 합법적 원칙: 수출업체는 수출통제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수출통제 내부준법 제도의 근본 원칙으로 삼고, 합법·준법 운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 업체의 관련 행위는 반드시 수출통제 법률법규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업체는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2) 독립성 원칙: 내수 준법 제도는 수출업체 관리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경영관리 체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함. 수출업체는 내부 준법 제도의 절차 통제와 제도적 보장을 통해 자신의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스스로 감독하며, 국가 수출통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준법 제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3) 실효성 원칙: 수출업체는 경영 실제 상황에 맞춰 효과적인 수출통제 내부 준법 제도를 수립하여, 고위층의 중시, 전원 참여, 전 과정 통제, 정기 평가, 지속적인 개선 운영 시스템을 실현함으로써 내부 준법 제도가 수출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함

Q65 수출통제 내부 준법 제도의 구체적 구성 요소는?

A 효과적인 수출통제 내부 준법 제도는 크게 아홉 가지 기본요소를 포함함

- (1)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명확하게 제도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고위층이 앞장서서 이를 실천해야 함
- (2) 수출통제 내부 준법 제도를 위한 조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3) 기업이 수출통제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위험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함
- (4) 수주 초기부터 출하 완료까지 전 과정을 심사해야 함
- (5) 비상조치를 제정하여 위반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보완조치를 취하며, 국가 수출통제관리부서에 적시 보고해야 함
- (6)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함
- (7) 수출통제 내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체계를 완비해야 함
- (8)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관해야 함
- (9)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적시에 업데이트 및 유지해야 함

Q66 수출업체가 수출통제 내부 준법 제도를 구축할 때 정책 성명(聲明) 작성 방법은?

A 정책 성명(약속 사항)은 크게 아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1) 수출통제 준법의 기본 목적과 중요한 의의를 천명
- (2) 수출통제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속
- (3) 어떤 경우에도 수출 통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 (4) 수출통제 준법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표시
- (5) 상업 활동 전에 수출통제 위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약속
- (6) 직원이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어떤 경우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하는 것을 금지
- (7) 수출통제 관련 법규를 위반할 위험과 가능한 처벌을 명시
- (8) 기업의 수출통제 준법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제공

Q67 수출업체가 수출통제 내부 준법 제도를 구축할 때 설립해야 하는 조직기구는?

A 수출업체는 자체 실정과 '종합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의사결정 기구의 지원을 받고 수출통제 준법 부처가 주도하며, 각 사업부가 구체적인 업무를 이행하는 전방위·다층적 준법 관리 조직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수출업체 경영관리자는 각 급의 조직 기구를 확정하고, 수출통제 준법 관리인원 선발 기준, 직무 책임, 권한 및 연락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법 업무 성과를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야 함. 조건이 갖춰진 수출업체는 수출통제 준법 기구를 관리체계에 통합할 수 있음.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수출업체는 수출통제 업무 규모, 종합 위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Q68 수출업체가 수출통제 내부 준법 제도를 구축할 때 '종합 위험 평가'의 주요 내용은?

A 종합 위험 평가는 수출통제 내부 준법 제도의 기초로서 구체적 내용은 크게 아래 몇 가지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

(1) 영업 품목 상황, (2) 고객 상황, (3) 기술 및 연구 개발 상황, (4) 내부 운영 상황, (5) 수출통제 관련 정보 정황, (6) 제3자 파트너 상황, (7) 위험 예방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내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따라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음

Q69 수출업체는 계약 체결 전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에 유의해야 하는가?

A 수출업체는 계약 전 심사단계에서 품목,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및 운송 경로 등 상황에 대해 종합평가를 시행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체의 수출통제 내부 준법 매커니즘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에 첨부된 '경고성 행위 참조표'에 따라 고객의 이상 행위 유무를 예의주시해야 함

Q70 ▶ 해관은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미제출한 수출 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A ▶ 중국 해관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123호에 따라 관리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123호

- (주요내용) ‘해관(=중국 세관)이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미제출한 수출 건에 이의제기(质疑)를 할 경우’에 대한 수출통관 행정절차를 규범화
- (적용 상황) 수출업체가 수출 예정 제품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해관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해관에서는 해당 제품이 이중용도 품목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 (절차) ① 해관은 수출업체 대상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해관 의문 통지서” 발송
② 수출업체는 ‘통지서’를 발급받은 7일(근무일 기준) 이내 통관신고서, 수출화물 계약서, 상황 설명서, 검험검측보고서 등 자료 제출 ③ 해관은 수출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 수출 예정, 품목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 적용 여부 판단·감별
- (결과) ①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이 아님”으로 확정되면 기업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통보
②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수출 불허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③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수출통제 관리부처(=상무부)에 감별 신청 후 결론과 규정에 따라 처리
- 감별 및 질의기간 해당 화물의 통관 절차는 중단됨

Q71 ▶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미제출한 수출 건에 대한 해관의 처벌은?

A ▶ 수출업체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내 품목 수출 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국 해관은 <수출통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수출통제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업체가 허가를 거치지 않고 통제품목을 무단으로 수출하는 경우^①, 수출허가증서에 명시된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통제품목을 수출하는 경우^②, 수출이 금지된 통제품목을 수출하는 경우^③에 대하여, 주관부처는 위법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통제품목 수출경영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 있음

Q72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A 중국 해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위반한 상황으로,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14조에 근거, 위법소득 몰수 및 물품가치의 30%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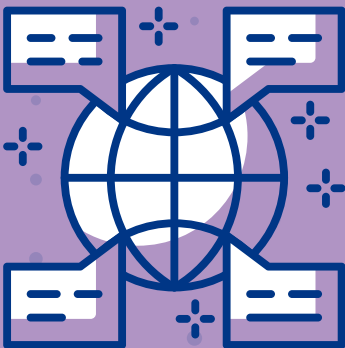
Q73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사후 보충할 경우, 처벌이 감면될 수 있는가?

A 이중용도 품목을 통관 신고 시 수출허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수출업체가 허가증을 사후 신청할 경우 '무허가 수출'에 해당함. 다만, 해관은 법집행 과정에서 기업이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보충할 경우 <행정처벌법> 제32조의 "적극적으로 위법행위의 위해성을 경감 혹은 해소" 조항을 참조하여 기업에 대한 처벌을 경감할 수 있음

* 본 5번 파트는 기업의 통관 단위 이해를 돕기 위해, 해관총서 공고  등을 참고해 작성함

04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세관번호 FAQ



04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세관번호 FAQ



[세관 번호 등]

Q1 이중용도 품목을 통관 신고 시 수출허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수출업체가 허가증을 사후 신청할 경우 '무허가수출'인가?

A '무허가 수출'에 해당함. 중국 <수출통제법> 제19조와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수출화물 적송인 혹은 통관 대리업체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시 반드시 상무부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증 명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해관법> 제24조와 <해관 수출입화물 통관 신고 관리규정> 제8조, 제14조 등 규정에 따르면, 이중용도 품목은 반드시 해관에 수출 통관 신고시 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함

따라서 특정 회사 통제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체가 통관 신고시 해당 회사 화물에 대해 수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 화물의 수출허가증을 제출하면 <수출통제법> 제34조와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제39조에 규정된 '무허가 수출'에 해당함

수출업체는 통관 신고 후 허가증을 사후 신청할 수 없음. 통관 신고 전 수출허가 신청을 제출했고 통관 후 해당 회사에 대한 화물 수출허가증을 취득했다라도, 이는 '무허가 수출'에 해당함

Q2 수출업체가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자문 결과를 받을 경우, 직접 수출 가능한가?

A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수출업체는 수출품목의 성능지표, 주요 용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중용도 수출허가 리스트(清單)>과 대조, 연구한 후 여전히 이중용도 품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상무부에 문의할 수 있음. 상무부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서면자료에 근거해 해당 품목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는가를 판단하고 답변함. 해당 답변은 수출업체가 제공한 서면 자료에 근거해 한 판단으로, 실제 수출품목의 '수출허가증 불요'에 대한 인정이 아님. 수출업체는 수출 시 실제 상황에 근거해 수출허가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함

수출업체는 상무부로부터 "상당 대상 품목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목록 내 품목 혹은 임시 수출통제 품목이 아님"이라는 답변을 받은 후에도 실제 수출 전 식별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통관 신고의 진실성, 효과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함.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품목을 수출할 때 고의로 상무부의 '답변서'로 허가증을 대체할 경우 '무허가 수출'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함

Q3 ▶ 세관 번호는 이중용도 품목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 ▶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清單)>는 이중용도 품목범위를 확정하는 기본 근거이자,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리부처(상무부)에서 수출허가를 실시하는 기본 근거로서, 통제 대상 품목에 세관 번호를 매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즉 세관 번호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님

2024년 12월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발표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는 모든 통제 대상 품목에 수출통제 코드를 부여함. (예 9A012.a.1, 9A012.a.2 등) 따라서, 상무부는 품목을 분류하고 심사할 때 수출통제 코드를 기준으로 함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목록(目錄)>은 관련 법규와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清單)>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수출업체 업무와 상무부처, 해관 등 관련 부처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 통제 품목과 세관 번호를 대응함

‘리스트’와 ‘목록’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률, 법규, 행정규범과 리스트에 따름. ‘목록’ 속 물품과 기술은 세관 번호 명시 여부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현행 ‘목록’ 내 모든 화물에 세관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님. 예컨대 수출통제 코드 2B201.b 밀링 머신과 2B201.c 연마기는 세관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지만 모두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음. 수출통제 코드 9A012.a.1와 9A012.a.2 품목은 기술기준이 서로 다른 통제 대상 무인기이지만 세관 번호가 동일함

05

이중용도 대표 품목 수출허가 신청 FAQ



05 이중용도 대표 품목 수출허가 신청 FAQ

1 품목별 : 흑연편



참고: 중국은 2023년 12월 1일부 흑연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포함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

품목명	수출통제 코드	통제 품목	HS코드 (2025년 기준)
흑연 및 제품	1C108.a	20℃ 온도 하에 ①밀도>1.72g/㎤, ②인장 파단 변형률≥0.7%, ③열팽창계수≤2.75×10 ⁻⁶ /℃ 등 3종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조 세정립 흑연체	3801100040
	1C108.b	①고순도(순도>99.9%), ②고강도(강도 >30Mpa), ③고밀도(밀도>1.73g/㎤) 등 3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조 흑연재 및 제품	3801100040 3801909010 6815190020
	1C108.c	천연 인상흑연 및 제품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포함)	2504101000, 2504109100, 3801901000, 3801909010, 3824999921, 6815190020

자료 : 상무부

Q1 ▶ 수출 예정 흑연 및 그 제품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대상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A ▶ 상무부·해관총서 2023년 제39호 공고인 “흑연품목 임시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商務部 海关总署关于优化调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公告) 에서 확인 가능.
수출업체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상무부의 공식 플랫폼 을 통해 “수출 업무 자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수출업체는 수출품목의 기술지표, 주요 용도 및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유 등을 제공하고, 상무부는 판단 후 적시에 답변

Q2 2023년 39호 공고의 인조흑연 품목에 대한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3종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A ①고순도(순도>99.9%), ②고강도(항굴절강도>30Mpa), ③고밀도(밀도>1.73g/cm³) 등 3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인조흑연 및 그 제품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임. 수출업체는 수출허가 신청시 인조흑연 및 그 제품의 기술설명 혹은 검측보고서에 제품의 순도, 항굴절강도, 밀도 수치를 명시해야 함

Q3 인조흑연 분말도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인조흑연 분말은 ①고순도(순도>99.9%), ②고강도(항굴절강도>30Mpa), ③고밀도(밀도>1.73g/cm³) 등 3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이 아님

Q4 금속 혹은 섬유 등 소재를 사용하여 보강한 흑연제품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금속 또는 섬유 등의 재료(예 면섬유, 유리섬유, 석면, 사불화아라미드, 테트라클로로에틸렌)로 보강된 흑연 디스크, 흑연 스페이서, 흑연 복합판, 흑연선, 흑연링은 현재 이중용도 품목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Q5 수출허가 신청서 중 계량 단위가 kg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 기타 계량 단위로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표기하면 되는가?

A 일부 흑연류 품목의 수출 계약은 파운드, 편(매), 개 등을 계량 단위로 하는데,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시 기업은 kg으로 환산하고 환산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함

Q6 '최종 사용처와 최종용도 증명서'는 원본을 제공해야 하는가?

A 원본을 제공해야 하며, 최종용도 책임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인해야 함

Q7 수출 품목의 최종 사용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A 수출업체는 수출 품목의 최종 사용처를 충분히 파악, 검증하고, 신청서 작성 시 최종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예컨대 엔진 스페이서, 내화 벽돌, 난연제 등 구체적 기술이 필요할 포괄적 설명은 지양해야 함

Q8 수출허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수출품목 최종 사용처가 조금 달라도 되는가?

A 수출허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수출품목 최종 사용처는 중문과 영문 설명은 100% 일치해야 함

Q9 수출허가 신청서 중의 '수화인' 란에 중개업체를 입력해도 되는가?

A 수입업체와 최종사용자 사이 중개업체가 있을 경우, 중개업체가 수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관련 상황을 보충 설명하거나 중개업체와 수입업체/최종사용자 사이 체결한 계약서/협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Q10 수출허가 신청서 중 법정대표인 사인에 서명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는가?

A 수출허가 신청서에는 법정대표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타인이 서명을 대신할 경우 법정대표인의 위임장(수권 위탁서)를 제공해야 함

Q11 수출 물량의 합리성에 대한 보충 설명에는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가?



A 수출업체는 과거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출상황, 최종사용자 생산경영 규모/수입수요 등에 의해 수출물량 보충이 필요함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함



참고

중국은 2025년 2월 4일부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포함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임. 세부 품목 및 HS코드는 본 보고서의 P. 44를 참고

Q1 수출 예정인 텅스텐 등 제품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대상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A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10호 공고인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데 관한 결정”(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5年第10号 公布对钨、碲、铋、钼、铟相关物项 实施出口管制的决定)  에서 확인 가능. 수출업체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상무부의 공식 플랫폼  을 통해 “수출 업무 자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수출업체는 수출품목의 기술지표, 주요 용도 및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유 등을 제공하고, 상무부는 판단 후 적시에 답변

Q2 ‘공고’ 중 1C117.d 텅스텐 관련 품목에는 간단한 혼합물도 포함하는가?

A 파라텅세텐산 암모늄(Ammonium paratungstate), 산화텅스텐, 탄화텅스텐과 기타 항목의 간단한 혼합물, 미소결 금속 탄화텅스텐은 이번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

Q3 ‘공고’ 중 1C117.c.2 “기계가공”이란?

A 이번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고체 텅스텐(1C117.c)은 재료 성분 조건(1C117.c.1)과 관련 수치, 형상 요구(1C117.c.2)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고체 텅스텐의 재료 특성으로 인해, “기계가공”은 선반, 프레이즈, 평삭, 연삭 등 절삭 가공(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압출, 인장, 확산과 같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공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Q4 ▶ 암모늄(메타)텽스텐 수화물(偏钨酸铵)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 암모늄(메타)텽스텐 수화물은 텽스텐의 산성 화합물로,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 아님

Q5 ▶ 소결된 금속 텽스텐 탄화물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 소결된 금속 탄화텽스텐, 탄화텽스텐 플레이트(블록, 로드, 볼), 탄화텽스텐 금속 세라믹, 탄화텽스텐 합금 분말, 탄화텽스텐 폐기물 스크랩, 탄화텽스텐으로 만든 초경합금 드릴, 블레이드 등, 다이아몬드 복합 시트, 텽스텐 후크(텽스텐강 포함), 스탬핑 몰드(텽스텐강 포함), 밀링 커터(텽스텐강 포함), 텽스텐 와이어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 아님

Q6 ▶ 텔루륨-아연-카드뮴 타겟재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 텔루륨-아연-카드뮴 타겟재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임

Q7 ▶ 텔루륨화 카드뮴, 텔루륨화 아연으로 제조한 태양광 모듈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인가?

A ▶ 텔루륨화 카드뮴, 텔루륨화 아연으로 제조한 태양광 모듈, 텔루륨화 카드뮴 박막 태양광 모듈, 텔루륨화 카드뮴 발전 유리, 텔루륨화 아연 카드뮴 고해상도 프로브 등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 아님

참고: 2025.2.4부 텅스텐 등 5종 핵심광물 대상 수출통제 세부 품목

품목명	수출통제 코드	통제 품목	HS코드 (2025년 기준)
I. 텅스텐 관련 품목	1C117.d	중텅스텐산암모늄	2841801000
		산화텅스텐	2825901200, 2825901910, 2825901920
		1C226에 해당하지 않는 산화텅스텐	2849902000
	1C117.c	기계 가공 가능한 형태의 고체 텅스텐(텅스텐 97% 이상)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기계 가공 가능한 형태의 구리- 텅스텐 합금(텅스텐 80% 이상)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기계 가공 가능한 형태의 은-텅스텐 합금(텅스텐 80% 이상, 은 2% 이상)	7106919001, 7106929001
	1C004	조건을 만족하는 텅스텐-니켈-철/구리 합금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1E004 등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	-	
II. 텔루륨 관련 품목	6C002.a	금속 텔루륨	2804500001
	6C002.b	카드뮴 텔루라이드	2842902000, 3818009021
		카드뮴-아연 텔루라이드	2842909025, 3818009021
		카드뮴-수은 텔루라이드	2852100010, 3818009021
6E002, 6C002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	-	
III. 비스무트 관련 품목	6C001.a	1C229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 비스무트 및 제품	8106101091, 8106101092, 8106101099, 8106109090, 8106901019, 8106901029, 8106901099, 8106909090
	6C001.b	비스무트 게르마네이트	2841900041
	6C001.c	트리페닐비스무트	2931900032
	6C001.d	트리스(4-에톡시페닐)비스무트	2931900032
	6E001, 6C001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	-
IV. 몰리브덴 관련 품목	1C117.b	몰리브덴 분말(미사일 부품용)	8102100001
	1E101.b 등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	-
V. 인듐 관련 품목	3C004.a	인듐 포스파이드	2853904051
	3C004.b	트리메틸인듐	2931900032
	3C004.c	트리에틸인듐	2931900032
	3E004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	-



참고

중국은 2025년 4월 4일부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가지 희토류 품목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임. 세부 품목 및 HS코드는 본 보고서의 P.47~48를 참고

Q1 ▶ 관련 합금 타겟재 중 희토류 성분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A ▶ 광고에 명시한 희토류 원소만 포함한 합금, 타겟재 뿐만 아니라, 명시한 원소와 명시하지 않은 원소를 모두 포함한 합금과 타겟재도 이번 수출통제 대상임

- 예
- ① 가돌리늄 12%, 마그네슘 70%, 니켈 6%, 네오디뮴 4%, 아연 3%, 나머지는 알루미늄, 망간, 철 성분으로 구성된 합금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수출통제 대상인 '가돌리늄-마그네슘 합금'에 해당함
 - ② 알루미늄 70~90%, 마그네슘 1%, 스칸듐 1%로 구성된 '알루미늄 합금 분말'은 수출통제 대상인 '스칸듐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함
 - ③ 니켈 55%, 사마륨 37%, 란탄 4%, 마그네슘 0.22%로 구성된 '니켈 합금 분말'은 수출통제 대상인 '사마륨 니켈 합금'에 해당함
 - ④ 알루미늄 98%, 스칸듐 2%인 알루미늄합금 스퍼터링 타겟재와 알루미늄 질화 스칸듐 40%인 '알루미늄 스칸듐 질화 스칸듐 타겟재'는 수출통제 대상인 스칸듐 타겟재로 분류됨

Q2 ▶ 광고에서 언급한 '혼합물'이란?

A ▶ 혼합물이란 고정된 화학식, 조성과 성질이 없고 구성 성분간 화학반응이 없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통제 대상 품목의 간단한 물리적 혼합을 의미함

- 예
- ① 순수 50%, 탄산바륨 30%, 산화이트륨 12%, 기타 미량 산화물 합계 8%의 '펄프(용액)'은 수출통제 대상인 '산화이트륨의 혼합물'로 분류
 - ② 이산화규소 58%, 염화칼슘 18%, 알루미늄 8%, 산화 디스프로슘 0.15%의 '광물토 건조제'는 수출통제 대상인 '산화 디스프로슘의 혼합물'로 분류
 - ③ 물 90%, 지르코니아 5%, 이트륨 0.5%로 구성된 촉매 원료는 수출통제 대상인 '이트륨 산화물 혼합물'에 포함됨

Q3 희토류 영구자석 중 수출통제 대상은?

A 사마륨 코발트 영구자석 재료, 테르븀을 함유한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 재료, 디스프로슘을 함유한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 재료를 추가로 단순 가공하여 형성된 1차 가공 제품, 예를 들어 시트, 와일, 링 및 관련 자석 모듈은 수출통제 대상임. 이들 품목은 자석강, 자석 링, 자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음. 추가 심층 가공으로 형성된 전자 부품(예 모터) 또는 전자제품(예 스피커, 헤드폰 등)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님

또한 형광체, 촉매 재료(예 자동차용 촉매), 결정 재료(예 루테튬 규산 이트륨 광학 결정), 세라믹 재료(예 이트륨 지르코늄 합금, 전자 의치용 지르코늄 자기 블록, 세라믹 증백제, 핫 스프레이 분말, 이트륨 안정 지르코늄 분말 등) 희토류 다운 스트림 부문의 기능성 소재는 중희토류 수출통제 대상이 아님. 이트륨 및 지르코늄 원소를 포함하는 품목의 관련 지표가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清單)> 1C234의 통제 품목의 지표를 충족하는 경우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함

가도부트롤(gadobutrol)-함수 화합물 및 DOTA(Gadoterate Meglumine-조영제)는 중희토류 수출통제 대상이 아님

참고: 2025.4.4부 7종 중희토류 대상 수출통제

품목명	수출통제 코드	세부 품목	HS코드 (2025년 기준)
I. 사마륨 관련 품목	1C902.a	금속 사마륨	2805301910
		사마륨 포함 합금	-
		타겟재	3824999922, 8486909110
		영구자석재	-
	1C902.b	산화 사마륨 및 그 혼합물	2846901940, 2846901993, 3824999922
1C902.c	사마륨 포함 화합물 및 혼합물	2846902810, 2846902910, 2846903910, 2846904820, 2846904910, 2846909920, 3824999922	
II. 가돌리늄 관련 품목	1C903.a	금속 가돌리늄	2805301910
		가돌리늄 포함 합금	-
		타겟재	3824999922, 8486909110
	1C903.b	산화 가돌리늄 및 그 혼합물	2846901930, 2846901993, 3824999922
	1C903.c	가돌리늄 포함 화합물 및 혼합물	2846902810, 2846902910, 2846903910, 2846904820, 2846904910, 2846909920, 3824999922
III. 테르븀 관련 품목	1C904.a	금속 테르븀	2805301300
		테르븀 포함 합금	-
		타겟재	3824999922, 8486909110
		영구자석재	-
	1C904.b	산화 테르븀 및 그 혼합물	2846901600, 2846901993, 3824999922
1C904.c	테르븀 포함 화합물 및 혼합물	2846902100, 2846902810, 2846903100, 2846903910, 2846904200, 2846904820, 2846909300, 2846909920, 3824999922	
IV. 디스프로슘 관련 품목	1C905.a	금속 디스프로슘	2805301200
		디스프로슘 포함 합금	-
		타겟재	3824999922, 8486909110
		영구자석재	-
	1C905.b	산화 디스프로슘 및 그 혼합물	2846901500, 2846901993, 3824999922
1C905.c	디스프로슘 포함 화합물 및 혼합물	2846902200, 2846902810, 2846903200, 2846903910, 2846904300, 2846904820, 2846909400, 2846909920, 3824999922	

품목명	수출통제 코드	세부 품목	HS코드 (2025년 기준)
V. 루테튬 관련 품목	1C906.a	금속 루테튬	2805301910
		이테르븀-루테튬 합금	-
		타겟재	3824999922, 8486909110
	1C906.b	산화 루테튬 및 혼합물	2846901800, 2846901993, 3824999922
1C906.c	루테튬 포함 화합물 및 혼합물	2846902810, 2846902910, 2846903910, 2846904820, 2846904910, 2846909920, 3824999922	
VI. 스칸듐 관련 품목	1C907.a	금속 스칸듐	2805301800
		스칸듐 포함 합금	-
		타겟재	3824999922, 8486909110
	1C907.b	산화 스칸듐 및 혼합물	2846901980, 2846901993, 3824999922
1C907.c	스칸듐 포함 화합물 및 혼합물	2846902810, 2846902910, 2846903910, 2846904820, 2846904910, 2846909920, 3824999922	
VII. 이트륨 관련 품목	1C908.a	금속 이트륨	2805301700
		이트륨 포함 합금	-
		타겟재	3824999922, 8486909110
	1C908.b	산화 이트륨 및 혼합물	2846901100, 2846901993, 3824999922
1C908.c	이트륨 포함 화합물 및 혼합물	2846902600, 2846902810, 2846903600, 2846903910, 2846904600, 2846904820, 2846909690, 2846909920, 3824999922	

자료 : 상무부

KOTRA자료 25-090

<쉽게 이해하는>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디자인·인쇄 화신문화(02-2277-0624)
I S B N 979-11-402-1399-3 (93320)
979-11-402-1398-6 (95320)

Copyright ©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